

수 신 시·도건축사회회장
(경유)

제 목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관련 국토교통부 해석 알림 [알림 2020-008]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-1871 (2020.03.09.) 관련입니다.
3.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을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23조제1항의 단서 중 ‘천재지변, 전쟁, 항만폐쇄, 전염병,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“을”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’로 해석함을 알리오니, 해당사항을 귀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관련 조항

제13조(공사기간의 연장) ① "갑"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, 불가항력의 사태등 "을"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"을"은 공사기간연장을 "갑"에게 요구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등 추가경비는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.

제23조(지체상금) ① "을"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(이하 "지체상금"이라한다)을 "갑"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, 전쟁, 항만폐쇄, 전염병,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, 기타 "을"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붙임 : 국토교통부 공문 1부. 끝.

대한건축사협회 회장



담당자	이예영	팀장	임태영	국장	강주석	사무처장	이남식	부회장	김기석	회장	석정훈
협조자											
시행	법제 230 - 518 (2020. 3. 31.)					접수					
우	06643	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8층					/ http://www.kira.or.kr				
전화번호	02-3415-6831 / 팩스번호 02-3415-6868					/ leeyeyoung@kira.or.kr / 비공개					